

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변경 등 결정 안내

제 4차 장기요양위원회('20.9.8.)에서 '21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률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이 결정되어 안내합니다.

□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급여비용 인상

- '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1.52%(1.27%p 인상)
-('20년) 건강보험료의 10.25% → ('21년) 건강보험료의 11.52%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

방문 간호	구분	30분 미만	30~60분 미만	60분 이상
	2021년	36,530	45,810	55,120
방문 목욕	구분	차량 이용 시		방문목욕(차량 미이용)
		차량 내 목욕	가정 내 목욕	
	2021년	75,450	68,030	42,480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변화
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2020년	1,498,300	1,331,800	1,276,300	1,173,200	1,007,200	566,600
2021년	1,520,700	1,351,700	1,295,400	1,189,800	1,021,300	573,900
인상률	1.5%	1.49%	1.5%	1.41%	1.40%	1.29%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학대난치성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%, 6%